



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약관

제 1 조 적용범위

- ①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」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2 조 이자
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그에 이은 익일(이하 "원가일"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
 - 1. 보통예금 : 매월 네번째 금요일
 - 2. 기업자유예금 : 매년 3 월, 6 월, 9 월, 12 월의 네번째 금요일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금리로 셈한다.
- ③ 이 예금의 이자는 제 1 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까지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, 5 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,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조 거래중지계좌

주식회사 카카오뱅크(이하 "카카오뱅크"라 한다)는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고객이 거래중지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을 신청한 때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1. 예금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2. 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원 미만이며, 2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3. 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 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
제 4 조 거래제한

이 예금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예금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, 해당 예금의 인출·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. 이 약관의 개정된 내용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.